

우체국 새봄자유적금 특약

제1조 【적용범위】

우체국 새봄자유적금(이하 “이 적금”이라 한다)의 거래 시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예금거래 기본 약관, 적립식 예금 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조 【예금종류】

이 적금의 종류는 자유적립식 예금이다.

제3조 【가입대상】

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(7 ~ 10등급)인 만 20세 이상 실명의 개인으로 1인 1계좌에 한한다. 신용등급은 신규 가입시 가입일 현재 우체국에서 조회한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.

제4조 【가입기간】

이 적금의 가입기간은 1년 만기로 한다.

제5조 【적립금액】

신규 가입 시 최저 1만원 이상이며 2회차 이후로는 1원 단위로 적립이 가능하고 총 저축한도는 300만원이다. 이 적금은 적립일 및 적립횟수를 정하지 않은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자동이체 약정도 가능하다.

제6조 【기본이율】

신규 가입일 현재 정기적금 1년 만기 기본이율 - 연 0.1%p로 한다.

제7조 【우대이율】

신규 가입일 현재 “특별우대금리”를 적용하며 우대이율은 만기 해지 시에만 적용된다.

제8조 【이율적용방식】

- ① 만기일이 휴일(우체국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)인 경우 익 영업일에 지급하며 만기 후 이자는 휴일기간에 대하여 우대금리를 포함하여 지급한다.
- ② 만기일이 토요일과 연계된 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 해약시 우대이율을 적용하며 만기이자는 매회 납입금액의 일적수에 만기이율을 곱하여 계산한다.
- ③ 이 적금의 이자율은 별도 고시하되, 이자율이 변경될 경우 변동일자 이후 가입분은 변경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.
- ④ 중도해지이율, 만기 후 이율은 가입당시 정한 이율을 적용한다.

제9조 【이자지급방식】

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.

제11조 【기타】

이 적금은 일반과세, 세금우대 또는 생계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양도 및 담보 제공은 불가하다.

부 칙

이 특약은 201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.